

제20호

행정명령

뉴욕주 재난 선포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2022년 7월 23일을 기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로 인해 2022년 7월 28일을 기해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공중 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위해(Imminent Threat to Public Health)로 선포했기 **때문에,**

뉴욕이 2022년 7월 29일 현재 기준 뉴욕주에 보고된 확진자 138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염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부가 조사 지원, 접촉자 확인 및 관찰, 노출된 접촉자 및 현재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원숭이두창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질병이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지자체, 지역, 카운티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8조 제2-B항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의거,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뉴욕주에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본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뉴욕주 전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9조 제2-B항에 따라, 본인은 공공 보건, 복지, 안전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뉴욕주 종합 비상 운영 계획(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의 시행을 명령하고, 모든 주정부 기관에 이러한 주 비상 사태를 관리, 예방, 대응, 회복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개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자산을 보호하며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합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일부터 2022년 8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보건부가 지역사회 긴급의료원에게 사전 승인을 한 경우, 인증 응급 의료 대원 및 선임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보건 커미셔너가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 일반적으로 응급 의료 상황이 아닌 환경 및 장소에서 비환자에게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보건법 3001조 세칙 6 및 7, NYCRR 10장 800.3조 세칙(o) 및 (p), 800.15조.

- 교육법 6951조 및 NYCRR 8장 79-5.5조. 이러한 조항이 정상적인 임신, 출산 및 산후 치료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건강한 여성의 기본적 임신 관련 건강 관리, 신생아 검사, 유아 소생 및 위탁을 제한하고, 또한 이러한 조항이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병원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조산사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본 재난 비상 사태의 목적에 한하여 조산사가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장소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원송이두창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이 경우, 교육부에서 면역 제제 주사를 위해 발행한 인증서가 없는 조산사는 보건부 커미셔너가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약사가 원송이두창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1조 2항, NYCRR 8장 63.9조.
-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간호사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사람에게 원송이두창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527조 세칙6항, 공공보건법 제6909조 세칙4항, NYCRR 8장 제64.7조,
- 등록 간호사, 약사 등 만 19세 이상에게 원송이두창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이 뉴욕주 면역 정보 시스템(New York State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NYSIIS) 또는 도시 면역 등록부(Citywide Immunization Registry, CIR)에 백신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변경하여 원송이두창 백신 접종자(아동 또는 성인)이 NYSIIS 또는 CIR에 가능한 경우 원송이두창 백신 접종 72 시간 내에 정보를 보고하도록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보건법 2168조 세칙3항, NYCRR 10장 66.1-2조. 본 내용의 어떠한 내용도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적법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허용하도록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천이십이년 칠월 이십구일 올버니 시에서
 자필로 서명하고 뉴욕주 주지사
 인감(Privy Seal of the State)으로
 날인하여 이를 명령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